

환경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종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850
----------	------

발의연월일 : 2007. 6. 12.

발 의 자 : 제종길·단병호·배일도  
우원식·조성래·김교홍  
민병두·천정배·김영주  
이목희·장복심·조정식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인류생존에 위협이 되고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원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제주체와 사회구성원에 대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할 것임.

따라서 유엔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건강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주창하면서 2005년부터 10년간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해로 선포한 바 있으며,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환경교육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와 민간에서 환경교육이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법적 기반과 제도가 미흡하여 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교육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진흥·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학교 및 사회에서의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 그리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년마다 환경교육시행계획을 추진함(안 제5조 및 제6조).
- 나.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심의하고 환경교육 시책을 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진흥·지원위원회를 둠(안 제7조).
- 다.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과교육 강화, 환경교원 활용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라.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마.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교육을 위하여 환경교육코디네이터 자

격제도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바.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하려는 기관·단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학교·사회환경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는 한국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진흥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환경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며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경제주체와 사회구성원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므로 국제연합이 주창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모든 국민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그리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스스로의 환경권을 누리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지구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대한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4. “환경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 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제2호에 따른 학교등
  - 나. 제12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 다. 제13조에 따른 한국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5. “사회환경교육기관”이란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된 환경교육관련 기관·단체를 말한다.
6. “환경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제9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7. “환경교육코디네이터”란 제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와 관련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 안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며 민간의 환경교육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의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책과 민간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교육종합계획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
3.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
5.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환경교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교원 및 환경교육코디네이터의 양성 및 활용 방안
8. 예산소요 전망과 재원조달 방법
9.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환경교육시행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교육인적 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마다 환경교육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1년마다 환경교육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교육진흥·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진흥·지원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
3.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4. 환경교육 국제협력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호선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환경교육진흥·지원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인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교환경교육 진흥)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권고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교과교육 또는 재량활동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
4. 교과교육과정에서의 환경교육 강화
5. 환경교원의 양성 및 활용
6.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체험 및 실천 환경교육의 활성화



8.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9.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한국환경교육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이념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에서의 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환경관련 교양과목의 개설 및 이수 의무화

2. 제9조에 따른 환경교원의 양성과정 개설

3. 제11조에 따른 환경교육코디네이터의 양성과정 개설

4. 환경교육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5. 그 밖에 고등교육에서의 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환경교원)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원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환경교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관련 전공을 한 자
2.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제11조에 따른 환경교육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교원을 두어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환경교육 지원) ①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제13조에 따른 한국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원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환경교육코디네이터의 양성과 활용 지원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은 환경교육코디네이터를 두어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대표자에게 환경교육코디네이터를 두어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환경교육코디네이터)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환경교육코디네이터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환경교육코디네이터 자격을 부여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코디네이터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코디네이터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사회환경교육기관) ①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환경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한국환경교육센터 등) ① 정부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한다.

1.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4. 환경교육코디네이터 양성 및 활용 장려

5.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연대사업

6. 환경교육코디네이터의 연수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한국환경교육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③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 환경교육코디네이터 양성기관, 사회환경교육기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환경교육진흥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환경교육진흥재단의 운영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15조(환경교육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가 및 지역수준의 환경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이 연계되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환경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외국 및 국제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학점인정 등) ① 이 법에 따른 환경교육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 및 사회환경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국·공유재산의 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환경교육에 실시에 필요한 국·공유 재산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각급학교는 이 법에 따른 환경교육 등의 실시를 환경교육센터 또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 1. 비용추계 요약

#### 가. 재정수반 요인

- 안 제13조에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환경교육지도사 양성 및 연수, 민간단체 환경교육 지원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환경교육 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 나. 비용추계의 전제

##### 1) 한국환경교육센터 설치관련

- 법 제정안에 따라 한국환경교육센터 및 부대시설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 운영비는 센터설립 이후 환경교육지도사 양성 및 연수, 민간단체 환경교육지원,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환경교육비 및 시설운영비,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1년을 기준으로 산정

##### 2) 센터설치 이외의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추계 미제시 관련

- 이 법안은 ①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10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1년마다 환경교육시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였는데, 종합·시행계획의 일부사항은 한국환경교육센터와 관련한 재정수반 사유이고 나머지는 재정수반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 그리고 교육인적자원으로 하여금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환경부로 하여금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

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대부분은 정책사업으로서 예산추계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환경교육진흥·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환경교육코디네이터 자격제도를 운용토록 하였으나 위원회와 자격부여자의 규모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재정수반을 추계하는데 애로가 있음.

#### 다.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항 목	합계	2008	2009	2010	2011	2012
부지 매입비	4,000	4,000	-	-		
건물신축 및 환경교육시설 설치	26,000	6,000	10,000	10,000	-	
운영비	9,100	-	-	3,000	3,000	3,100
합 계	39,100	10,000	10,000	13,000	3,000	3,100

라. 작성자 : 세종길의원(이정환보좌관 구내 2608)



## 2. 비용추계 상세내역

### 가. 한국환경교육센터의 기능

-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 환경교육지도사 양성·연수 및 채용 장려
- 민간단체 환경교육 지원
- 기타 환경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위탁 또는 인정하는 사업

### 나. 항목별 소요비용

- 1) 한국환경교육센터 토지 매입비 : 4,000백만원
  - 부지면적 : 약 4천평(4층 건물)
    - 건축 연면적 : 약 2,500평
  - 예상 매입가 : 백만원/평
  
- 2) 건물신축 및 환경시설 설치비 : 26,000백만원
  - 설계비 : 806백만원(건축비의 4.03%)
  - 감리비 : 300백만원(건축비의 1.5%)
  - 시설부대비 : 72백만원(건축비의 0.36%)
  - 환경교육시설비(교육훈련장, 체험학습장, 전시장 등) : 4,822백만원
  - 건축비 : 20,000백만원(평당공사비 8백만원)
  
- 3) 운영비 : 3,000백만원/연
  - 인건비 : 900백만원(30명×30백만원)
  - 경상운영비, 자산취득비, 외부강사 수당 등 : 2,100백만원